

의안번호	제 406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9월 일 (제283회)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

발 의 자	심홍섭 의원 외 6인
발의연월일	2009년 9월 1일

#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

(심홍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06
----------	-----

발의연월일 : 2009년 9월 1일

발 의 자 : 심홍섭·민경환·박종갑·박영웅·  
송은섭·장주식·이영복 (7인)

## 1. 제안 이유

- 도민의 휴식공간인 미동산수목원 시설물의 관리와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미동산수목원의 진흥실시계획을 수립·시행, 수목원의 각종 시설물의 개방, 수목유전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나. 수목원의 개원과 휴원일, 관람과 입장시간의 규정(안 제4조, 안 제5조)
- 다. 수목원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무료 명시(안 제6조)
- 라. 입장과 관람 제한 규정 명시(안 제7조)
- 마. 수목원내에서 제한되어야 하는 행위의 규정(안 제8조)
- 바. 수목원과 시설물의 사용허가와 제한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사. 수목원 관리·운영, 전문수목원 조성을 위한 관리와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0조)

아.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외부강사의 강사료 지급 규정  
(안 제11조)

자. 수목원의 시설물, 재산의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안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5. 예산조치 : 자체 세부계획수립시 재원확보

6. 관련부서 협의 : 산림환경연구소

7. 입법예고 : 2009.08.12 ~ 2009.08.31(특이의견 없음)

충청북도 조례 제 호

##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시설물의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산1-3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청장이 수립하여 시행하는 수목원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미동산수목원의 진흥실시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목원의 산림과학박물관, 목재문화체험장, 미동산생태관, 방문자센터, 난대식물원, 온실 등(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각종 시설을 개방하도록 한다.

③ 도지사는 수목원내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복원·관리와 전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개원과 휴원) 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원하여 개방지역내의 식물자원과 각종 전시물을 공개한다.

1. 1월 1일

2. 설날

3. 추석

4.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 연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5. 그 밖에 도지사가 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날짜

② 수목원 시설의 공사, 재해피해 복구, 전시관의 보수 등으로 개원하는 것이 부적합 할 때에는 시설물의 일부나 전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관람 기간의 제한과 그 대상 시설물은 산림환경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5조(관람과 입장시간) ①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 ~ 다음 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수목원의 입장시간은 오전 0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도지사는 수목원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수목원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입장과 관람의 금지)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과 관람을 금지한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관람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자
2. 술에 취한 자, 소란행위 등 미풍양속과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
3. 보호자가 없는 정신질환자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5. 산불발생이 우려되는 화기나 인화물질을 소지한 자
6. 애완동물을 동반하고 입장하는 자(단, 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은 제외)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수목원과 시설물 내에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목, 식물과 각종 시설물 등을 손상시키는 행위
2. 동물 밀렵과 포획, 곤충채집, 식물채집, 토석채취 행위
3. 전동보드, 오토바이 등 동력장치와 전기 등을 이용한 기구를 타는 행위
4. 체육활동과 레크리에이션을 하는 일체의 행위(롤러스케이트·킥보드 타는 행위, 배드민턴·야구·족구와 골프채 휴대 행위 등)
5. 자전거를 타는 행위(단, 기존에 인정된 산악자전거 대회는 제외)
6. 종교의식과 모임활동 등을 하는 행위
7. 무단방뇨, 환경오염, 소음공해, 오물,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8. 포장마차, 노점상 등에 의한 상행위
9. 음주, 취사, 소란을 피우는 행위
10. 주차장 외의 지역에서 주·정차하는 행위
11. 그 밖에 관람객의 관람이나 수목원의 관리와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연구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퇴원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수목원과 시설물의 사용허가와 제한) ① 수목원과 시설물에서 행사를 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등은 사전에 연구소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목원과 시설물의 사용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에 의한다. 다만, 연구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수목원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연구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수목원과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2. 특정 기관·단체의 영리목적 행사
3.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

제10조(관리와 운영의 위탁) 연구소장은 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전문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기관이나 관련 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수목원의 보안과 경비
2. 수목원 관람 안내
3. 수목원 조경 식재와 조경 관리
4. 수목원 조성을 위한 양묘장 관리
5. 수목원 환경미화
6. 각종 문화와 전시행사
7. 그 밖에 수목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강사료 지급)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초빙한 외래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수목원의 시설물이나 재산을 훼손하거나 절도한 자에게 원상복구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유재산(시설) 사용 신청서

결 재	담당	팀장	과장	소장
협조 :				

기관(단체)명		대표자		전화 (FAX)	
기관(단체) 주소					
실무책임자	(부서)	(직)	(성명)		
사용목적					
사용인원	명 (남 , 여 )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사용시설					
<p>「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환경연구소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기관·단체) (인)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장 귀하</p>					

공유재산(시설) 사용(설치) 허가증

기관(단체)명		대표자		전화 (FAX)	
기관(단체) 주소					
사용목적					
사용인원	명 (남 , 여 )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사용시설					
<p>「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환경연구소 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장 (직인)</p>					



## 관 계 법 령

### □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립수목원 등) ①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산림청장 소속 하에 국립수목원을 둔다.

②국립수목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립수목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수목원을 수목유전자원의 보전·전시 및 자원화 등을 통한 임업의 소득증진 기반시설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제6조 (수목원진흥기본계획 수립) ①산림청장은 수목원의 확충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국립수목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수목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